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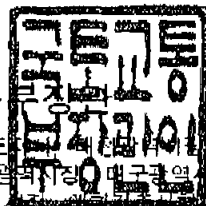
2. 우리 부에서는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건축법령 제도개선을 위하여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15.7.14(화)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조 문	현 행	개정내용 및 사유
건축법	(예시) · 제14조(건축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 병기작성)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끝.

국토교통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국건축가협회장 귀하, 대한건축학회 회장 귀하, 새건축가협의회장 귀하,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귀하,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귀하,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귀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귀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주무관 **진해동** 시설 사무 **관** **조현환** 파장 **김상문** 전결 2015. 7. 9.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6152 (2015. 7. 9.)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드림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60 팩스번호 044-201-5574 / jstory@molit.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를 늘고 생활을 편리해집니다